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8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박 정·이성만·어기구

김민기 • 이형석 • 서삼석

전용기 · 이상헌 · 윤후덕

신현영 · 신영대 · 전혜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전문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스포츠를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체육단체 통합의 의미를 살려, 공고한 생활스포츠의 기반 위에서 전문스포츠가 발전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 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 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 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스포츠

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가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 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 4. 스포츠클럽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수를 상시적으로 유지할 것
-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 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및 경기단

- 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는 스포츠클럽이 납부한 회비 및 회비의 사용 내역을 제17조의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공개하여 야 한다.
- ③ 스포츠클럽이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에 납부할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할 수 있다.
 -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3. 연령·지역·계층·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종목 및 비인기종목의 육성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 가.「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나. 연령·지역·계층·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다.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라. 기초종목 및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
 - 3. 지정스포츠클럽이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 4.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 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순회 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선수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등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중체육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지정스포 츠클럽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 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제1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 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회원의 인권·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스포츠 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

회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 제18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 로가 큰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으로 정한다.